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949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피 고 1. B

2. C

3. 주식회사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L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양도일자에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M 주식회사가 2021. 1. 27.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305호로 혼합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각 출급청구권을 위 주식회사 L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각 채권을 L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D, 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인용)

가. 전제되는 사실

1) 원고의 L에 대한 채권

원고는 L을 상대로 2019. 11.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472,438,600원 및 2019. 11. 11.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금 3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L은 원고에게 812,4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차5895), 이는 2020. 2. 20. 확정되었다.

2) L의 채권양도 등

가) L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하여 ‘목포시 N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O는 2019. 6. 14. L이 M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278,460,000원의 범위에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카합128), 위 가압류결정은 2019. 6. 19. M에 송달되었다.

다) L은 2019. 11. 8.부터 2019. 11. 15.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합계 337,700,000원 부분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M에 대한 각 채권양도 통지일자는 같은 목록 기재와 같다(2019. 11. 11. 및 2019. 11. 15.).

3) 원고의 채권 가압류 및 압류 · 추심명령

가) 원고는 2019. 12. 9. L이 M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100,000,000원의 범위에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카합271), 위 가압류결정은 2019. 12. 12. M에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25. L이 M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600,000,000원의 범위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20타채228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0. 3. 30. M에 송달되었다.

4) M의 혼합공탁

M은 2021. 1. 27. L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O의 가압류, 피고들의 채권양도,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L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잔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 366,999,0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광주지방법원 2021년 금 제305호로 혼합공탁(변제공탁 및 집행공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1)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될 당시인 2019. 11. 무렵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될 당시인 2019. 11. 무렵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가 2021.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1년 전에 L의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위 전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L에 대하여 2019. 11.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472,438,600원 및 2019. 11. 11.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금 340,000,000원 합계 812,4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L이 2019. 11. 11. 무렵 부도가 난 점에 비추어 보면 2019. 11. 8.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전부터 L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해 L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L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L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된다.

나) 피고들의 선의 수익자 항변에 관한 판단(= 배척)

피고들은 L로부터 공사대금 등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정당하게 양수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L과 거래관계에 있었으므로 L의 재산상태나 영업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인 채권양도의 수익자가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을 공탁한 경우, 비록 제3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¹⁾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참조).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L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위 채권양도계약에 기초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L에 양도하고(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이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 E,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인용)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위 피고들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열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에서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의 청구취지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L에 양도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 없이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나상아, 판사 박건훈

별지 1

※ 다만 순번 10의 양도일자는 오기이고, 정확한 일자는 2019. 11. 15.이다.

채 권 의 표 시

1. 2019. 11. 8. 주식회사 [] 이 피고1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
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40,0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2. 2019. 11. 8. 주식회사 [] 이 피고2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
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16,4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3. 2019. 11. 8. 주식회사 [] 이 피고3 주식회사 []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17,100,000원 (통지
일 2019. 11. 11.)

4. 2019. 11. 8. 주식회사 [] 이 피고4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
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8,4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5. 2019. 11. 8. 주식회사 [] 이 피고5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
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27,5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6. 2019. 11. 8. 주식회사 []이 피고6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7,0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7. 2019. 11. 8. 주식회사 []이 피고7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19,0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8. 2019. 11. 8. 주식회사 []이 피고8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42,3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9. 2019. 11. 8. 주식회사 []이 피고9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80,000,000원 (통지일 2019. 11. 11.)

10. 2019. 11. 8. 주식회사 []이 피고10 []에게 양도한 []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가지는 목포시 소재 []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창호공사대금 80,000,000원 (통지일 2019. 11. 15.)

끝.

별지 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지위

원고는 광주 광신구 P []에서 "주식회사 A []"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소의 주식회사 L [] (이하 "L []"이라 생략함)의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위 L []과 공모하여 사채의 의사로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L []의 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들입니다.

2. 채권채무관계의 발생 및 불이행

가) 원고는 소의 L []의 요청으로 수년 전부터 2019. 11. 11.까지 남양주 Q [] 아파트 신축공사, 목포시 N [] 주거복합 신축공사, 목포 R [] 아파트 신축공사, 부산 S [] 아파트 신축공사, 전북 순창 T [] 아파트 신축공사, 광주 U [] 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건설폐기공사를 하고 금 472,438,600원의 공사대금이 잔존합니다.

나) 원고는 위 공사대금과 별개로 L []이 발행한 약속어음 금3억4천만원을 공사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L []은 지급일 2019. 11. 10.자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9. 11. 11. V [] 은행 양산동지점은 부도처리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가항 공사대금에 관한 금472,438,600원 및 나항 부도 처리된
 약속어음 금3억4천만원의 합계 금 812,43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L
 로부터 지급 받아야 합니다. [갑제1호증 1 지급명령 참조]

라) 원고는 위 청구금원에 기하여 채무자 L, 제3채무자 주식회사 M
 주식회사를 상대로 귀원 2019카합271 채권가압류 결정을 2019. 12. 9. 인용 받
 았으며, 귀원2020타제22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2020. 3. 25. 인용 받았습니다.
 [갑제1호증의 2, 3 가압류 결정문 및 추심명령 결정문 참조]

3. 사례행위 및 피고들의 악의, 제3채무자의 공탁

L 은 원고의 채권보전행위 및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자신이 소의 M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목포시 소재 N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도 이틀 전에 피고들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부도 처리
 가 확정된 2019. 11. 11. 제3채무자 M 주식회사에 양도 통지하였으며, 소의
 M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수도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채권가압류 명령을 송
 달받았고, 채권 양수도 이후에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송달되어
 L 에 지급할 공사대금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1. 27.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1금 제305호로 금366,999,089원을 상대적불확지 공탁
 하였습니다. [갑제2호증 1, 2, 3 및 갑제3 내지 12호증 양도양수 계약 및 통지서 참조]

위 2021금 제305호 공탁원인사실에 표기된 이해관계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당사자	채권금액	송달일	비고
가압류권자	(주) O	278,490,000	2019. 06. 19.	
가압류권자	W	2,300,000	2019. 08. 01.	
피고1 양수인	B	40,000,000	2019. 11. 11.	
피고2 양수인	C	16,400,000	2019. 11. 11.	
피고3 양수인	(주) D	17,100,000	2019. 11. 11.	
피고4 양수인	E	8,400,000	2019. 11. 11.	
피고5 양수인	F	27,500,000	2019. 11. 11.	
피고6 양수인	G	7,000,000	2019. 11. 11.	
피고7 양수인	H	19,000,000	2019. 11. 11.	
피고8 양수인	I	42,300,000	2019. 11. 11.	
피고9 양수인	J	80,000,000	2019. 11. 11.	
피고10 양수인	K	80,000,000	2019. 11. 15.	
가압류권자	X	100,000,000	2019. 12. 03.	
압류권자	W	3,000,000	2019. 12. 03.	
원고 가압류권자	(주) A	100,000,000	2019. 12. 12.	
가압류권자	Y 공제조합	629,000,000	2019. 12. 28.	
압류권자	W	9,829,381	2020. 02. 07.	
원고 압류권자	(주) A	600,000,000	2020. 03. 30.	
압류권자	(주) Z	5,246,485	2020. 04. 29.	
압류권자	(주) AA	200,000,000	2020. 05. 06.	
피고3 가압류권자	(주) D	17,100,000	2020. 05. 22.	
압류권자	AB	17,550,821	2020. 06. 10.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4다7873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대법원 95다519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4. L의 채무초과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 주식회사 L은 2019. 11. 9.자 만기어음부터 2020. 1. 25.자 만기어음까지 75매, 금액 79억6,381만6천원의 약속어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 이외에도 원고들이 알고 있는 채무는 27억2,150여만원(L 채무 : 원고 8억1,200만원, (주)AC 2 4억7,780만원, AD X 1억7,600만원, (주)AE 1억1,400만원, (주)AA 11억4,170만원 합계 27억2,150만원)에 이르러 채무자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당시 100여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무자 소의 L의 적극 재산은 M 주식회사로부터 지급 받을 금5억여원의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갑제13호증 내지 14호증 참조]

따라서 L은 위 채권의 양도양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5. 원상회복

피고들은 위와 같이 채무자 주식회사 L이 소의 M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목포시 소재 N 주상복합건물공사 중 금속창호공사대금을 제권양도양수라는 방법으로 사해행위에 터 잡아 양수받았으나,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요자 부득이 본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끝.

1) 위 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여기서 ‘채권자’라 함은 제3채무자의 채권자, 즉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의 ‘채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다.